

시의회 보고

〈 (재)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〉

2022. 11. 24.

평생교육국

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

□ 개정사유

-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 당연직 직무감사 소속을 변경하고
-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 점검·정비추진 계획(서울시 공기업담당관)에 따라 정관에 임원 결격사유를 반영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조항	주요 내용	관련 근거
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 제6항	- (개정)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직무감사 소속 변경 · 교육정책과장 → 교육지원정책과장	- 평생교육국 조직개편 알림 (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-244, 2022.8.24.)
제21조(임원 선임의 제한)	- 임원 결격사유 신설	-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추진계획 제출(공기업담당관-5901, 2021.5.26.) - 출자출연법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
부칙	- 제1조(시행일) ·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22.10.5)부터 시행한다.	

붙임 1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20조(임원의 선임 방법)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, 직무감사는 시 <u>교육정책과장</u>을 당연직으로 하고,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20조(임원의 선임 방법)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, 직무감사는 시 <u>교육지원정책과장</u>을 당연직으로 하고,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임원 선임의 제한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(신설)</p>	<p>제21조(임원 선임의 제한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미성년자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p>부칙</p> <p><신설></p>	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</p> <p>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(2022.10.5)부터 시행한다.</p>